2021년 제1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제1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일반전형: 89명 / 장애인전형: 0명)

응 시 번 호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2. 체력시험 일정

가. 시험일시 : 2021. 4. 29.(목) 14:00 ~ 종료시

나. 등록시간 : 시험당일 13:30~14:00

* 시간 내 미등록시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다. 시험장소 : 울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불임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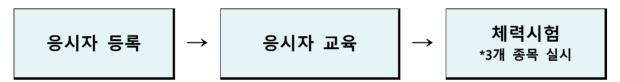
○ 응시자 집결장소 : 울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운동장관리처 입구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라.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응시표,

체력시험에 알맞은 복장(체육복, 운동화 등)

마. 세부진행계획



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5. 4.(화)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공고 예정

3. 체력시험 실시방법

가. 시험종목: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3개 종목

나. 평가점수 ※【붙임2】체력시험 평가기준 참조

다. 측정방법 ※【붙임3】 체력시험 측정방법 참조

라. 합격기준 : 종목별 실격 없이 종목별 40퍼센트 이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는 모두 합격

4.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변경공고(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할 예정입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체력측정에 필요한 간소복과 운동화 등을 착용하고 지정된 일시에 대기장소에 도착하여 관계자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 여권만 인정되고, 그 밖의 신분증(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집결시간 내 입장하지 않은 응시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마.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사. 체력시험은 장갑 착용·개인소지용 파우더 사용은 일체 불허하며 징 또는 스터드가 있는 신발(스파이크 등)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아. 체력시험 중 응시자는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 지시에 따라야하며, 허가 없이 무단 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도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자. 시험관리관 지시에 불응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의 정지·뭏와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 우천시 운동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 체력시험 일정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 변경일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별도 공고 예정

5.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 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가급적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응시자 시험응시 관련 안내
 - ▶ 체력시험일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응시 불가능
 - ※ 체력시험일 이전 완치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응시가능(증빙 서류 제출 필요)
 - ▶ 체력시험일 기준 자가격리자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응시 불가능. 단,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응시신청서"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하여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통보된 장소 등 에서 응시할 수 있음

< 자가격리자 자진신고 안내 >

- 신고기간 : 체력시험 시행 3일전까지
- 신고방법 : 붙임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응시 신청서 작성 제출
- ※ 응시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①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신청서(붙임)** ② **자가격리통지서 사본**을 채용담당자 이메일(ehana@korea.kr)로 제출 후 유선 통보(052-228-5531) 바람.
- ※ 협의결과에 따라 장소시간 등 시험응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보 예정이며, 당사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확보하여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개인차량 하차 전 개인보호고 착용여부 확인 예정이며, 개인보호구 중 1개라도 미착용시 시험응시 불가)
- ※ 상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다.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내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고 **청결 유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개인 손수건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라. 응시생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감독관 및 진행요원의 요구에 따라 신분확인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 시험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험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코로나19 관련 추가 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바. 시험 종료 후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1339) 및 시험응시 기관에 증상 발생사실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 ▶ 응시자가 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조치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체력시험장 위치도 안내

- 울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 집결장소 : 종합운동장관리처 입구(관리초소 옆)





붙임2

체력시험 평가기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청원경찰 채용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제12조제2호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 13.5	13.6 [~] 14.0	14.1 ~ 14.5	14.6 ~ 15.0	15.1 ~ 15.5	15.6 [~] 16.0	16.1 [~] 16.5	16.6 [~] 16.9	17.0 야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 55	54 [~] 51	50~46	45~40	39~36	35 [~] 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59	58 [~] 56	55 [~] 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 17.1	17.2 [~] 17.9	18.0 ~ 18.7	18.8 ~ 19.4	19.5 [~] 20.1	20.2 [~] 20.8	20.9 [~] 21.5	21.6 야후
	윗몸일 <u>으</u> 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 [~] 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kg)	40 이상	39~38	37 [~] 36	35 [~] 34	33~31	30~29	28 [~] 27	26~25	24~22	21 이하

비고

-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40퍼센트 미만 총점 평균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초)	 가.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도전이 가능하다. 3)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윗몸일으키기 (회/1분)	 가. 측정방법 1) 양발을 30㎝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2)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3) 양 팔꿈치로 양 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기록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3) 실시도중 목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좌우 악력 (kg)	가.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나.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2021년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자가격리자 체력시험 응시 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주 소:		
※ 시험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 자가격리 기간 :		
※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간 기재		
상기 본인은 자가격리자로서 「2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체력시	, ,	해양수산청
붙임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1부.		
	신청일자 : 2021.	• •
	신 청 인 :	(서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